**※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
| ② |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 ③ | 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④ | 표현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그 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⑤ |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2.**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
| ② |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영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으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
| ③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
| ④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 ⑤ |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3.**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 ②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 ③ |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 ④ |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 ⑤ |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해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

**4.**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 ③ | 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 ④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⑤ |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5.**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③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 ④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 ⑤ |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

**6**.상법상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 ② |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③ | 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한,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 ④ |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 ⑤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7.**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
| ②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다. |
| ③ |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
| ④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 ⑤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

**8.**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②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③ |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 ④ |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⑤ |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이다. |

**9.**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회사의 분할은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 ②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 ③ | 휴면회사의 해산의제는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 ④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 ⑤ |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10.**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 ②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 ③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 ④ | 모집설립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
| ⑤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1.**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으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할 수 있다. |
| ③ | 회사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 ④ |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 ⑤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2.**상법상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④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 ⑤ |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

**13.**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음)

|  |  |
| --- | --- |
| ① | 해산판결청구권 |
| ② | 주주제안권 |
| ③ | 청산인해임청구권 |
| ④ | 감사해임청구권 |
| ⑤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14.**상법상 주권 발행 후에 이루어진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③ |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④ |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⑤ | 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5.**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 ②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아 양도인과 공동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
| ④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⑤ | 만약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

**16.**상법상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 ② |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 ③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④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 ⑤ | 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그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자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17.**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합병계약서 승인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 ② |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③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18.**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②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⑤ |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

**19.**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 ② | 주주가 아닌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③ | 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⑤ |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20.**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②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
| ③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 ④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 ⑤ |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1.**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
| ② |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
| ③ |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④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면 그 박탈하는 결의는 효력이 있다. |
| ⑤ |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

**22.**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②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 ③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④ | 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 ⑤ |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면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

**2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 ②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4.**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 ②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 ③ |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
| ④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⑤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5.**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그 자본금 증가의 등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 ② |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만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 ③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 ④ |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⑤ | 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26.**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 ② |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③ | 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④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
| 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27.**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
| ② |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
| ③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없다. |
| ④ |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
| ⑤ | 사원이 아닌 자가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자가 된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

**28.**상법상 신주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주금납입채무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 ② |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 ③ |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없다. |
| ④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⑤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29.**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
| 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 ③ |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
| ④ |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⑤ |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30.**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②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허용된다. |
| ③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 ④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 ⑤ |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31.**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
| ②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
| ③ | 소규모합병의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④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
| ⑤ |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32.**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
| ②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 ③ |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 ④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지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

**33.**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
| ② |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③ | 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
| ④ | 환어음의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⑤ |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며,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발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34.**어음의 항변 및 융통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융통어음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
| ② |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 ③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 ④ |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어음채무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⑤ |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는 항변으로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 |

**35**.어음과 수표상 권리의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어음소지인이 약속어음 발행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②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③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④ |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⑤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6.**어음과 관련한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
| ① | 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해 모든 어음채무자들의 항변은 소멸한다. |
| ② |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③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 ④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와 관련된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
| ⑤ | 양도인이나 그 어음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37.**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어음을 인수한 지급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
| ② | 인수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 ③ |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④ |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
| ⑤ |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

**38.**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
| ②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
| ③ |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④ | 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
| ⑤ | 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하고,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

**39.**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환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도 피배서인이 될 수 있다. |
| ② |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 ③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④ | 기한후배서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말한다. |
| ⑤ |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

**40.**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
| --- | --- |
| ① |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② | 수표는 인수하지 못하며,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③ |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 ④ | 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 ⑤ |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 ② |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 ③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 ④ |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 ⑤ |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2.**「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 ② |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 ③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④ |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
| ⑤ | 국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납세담보물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에도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 ② |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
| ③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 ④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  |  |
| --- | --- |
| ⑤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때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

**4.**「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 ② | 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④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 ⑤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  |
| --- | --- |
| ①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② |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 ③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 ④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 ⑤ |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6.**「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② |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③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④ |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 ⑤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7.**「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② |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③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④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골동품의 양도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8.**㈜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이다. 비과세 합계액과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1)  급여: 40,000,000원  (2)  식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받은 식대: 1,200,000원(월 100,000원씩 수령)  (3)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  (4)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5)  ㈜A가 갑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 1,000,000원  (6)  갑이 자기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 2,000,000원(10개월간 월 200,000원씩 수령)  (7)  시간외 근무수당: 2,000,000원 |

|  |  |  |  |
| --- | --- | --- | --- |
|  | 비과세 합계액 |  | 총급여액 |
| ① | 12,700,000원 |  | 48,500,000원 |
| ② | 12,700,000원 |  | 43,000,000원 |
| ③ | 13,900,000원 |  | 47,300,000원 |
| ④ | 18,000,000원 |  | 48,500,000원 |
| ⑤ | 18,000,000원 |  | 43,000,000원 |

**9.**「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 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
| ③ |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 ④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
| ⑤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

**10.**거주자 갑의 2021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소 득 | | 본인(남성) | 41세 | 총급여액 50,000,000원 | | 부 친 | 83세 | 공무원연금 수령액 30,000,000원 | | 모 친 | 78세 | 소득없음 | | 아 들 | 10세 | 소득없음 |   (2)  배우자(41세, 소득없음)와 2021년 7월 1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3)  부친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4)  모친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8,500,000원 | ② | 9,500,000원 | ③ | 10,000,000원 |
| ④ | 11,000,000원 | ⑤ | 12,500,000원 |  |  |

**11.**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1)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자료  ① 총수입금액: 300,000,000원  ② 필요경비: 390,000,000원  (2)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대표자 갑의 인건비 30,000,000원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갑의 딸 인건비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소득 이외의 각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①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  ②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① | 0원 | ② | 10,000,000원 | ③ | 20,000,000원 |
| ④ | 40,000,000원 | ⑤ | 70,000,000원 |  |  |

**12.**「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 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
| ③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 소득세 및 이와 유사한 세목으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포함된다. |
| ④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 ⑤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해발생의 비율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13.**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  |
| --- |
| (1)  직장공제회 탈퇴로 받은 반환금: 20,000,000원(납입공제료 10,000,000원)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000,000원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5,000,000원  (4)  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5)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15,000,000원  (6)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2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① | 47,200,000원 | ② | 50,000,000원 | ③ | 52,200,000원 |
| ④ | 55,200,000원 | ⑤ | 62,200,000원 |  |  |

**14.**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이 2021년 중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갑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1)  본인(50세)의 대학원 등록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아들(22세, 소득없음)의 대학 등록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학자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딸(16세, 소득없음)의 중학교 교과서 대금 100,000원과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모친(75세, 소득없음)의 평생교육기관 교육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아들, 딸, 모친은 갑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710,000원 | ② | 1,860,000원 | ③ | 2,010,000원 |
| ④ | 2,085,000원 | ⑤ | 2,160,000원 |  |  |

**15.**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구 분 | 계약금(계약일자) | 잔금(잔금일자) | 취득 및 양도가액 | | 취 득 | 50,000,000원  (2014.2.2.) | 450,000,000원  (2014.5.5.) | 500,000,000원 | | 양 도 | 100,000,000원  (2021.3.3.) | 900,000,000원  (2021.4.4.) | 1,000,000,000원 |   (2)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자료   |  |  | | --- | --- | | 내 역 | 금 액 | |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2,000,000원 | | 취득세 | 5,000,000원 | |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 1,000,000원 | |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3,000,000원 |   (3)  갑은 2016년 6월 6일부터 양도 시까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4)  갑과 세대원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  |
| --- |
| (5)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25,480,000원 | ② | 29,340,000원 | ③ | 29,400,000원 |
| ④ | 29,520,000원 | ⑤ | 29,820,000원 |  |  |

**16.**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
| ② |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신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
| ④ |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②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8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8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8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④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 1,500,000원(이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450,000원임)을 장부상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1,5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45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⑤ | 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18.**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내 용 | 금 액 |
|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원 |
| (2)  비용으로 처리된 업무무관자산 관리비 | 700,000원 |
| (3)  비용으로 처리된 원재료 연지급수입이자 | 400,000원 |
| (4)  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전기 납부분) | 500,000원 |
| (5)  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 10,000원 |
| (6)  자산으로 처리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 | 200,000원 |
| (7)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중 당기 손금산입액 | 100,000원 |
| (8)  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 3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① | 1,190,000원 | ② | 1,290,000원 | ③ | 1,390,000원 |
| ④ | 1,590,000원 | ⑤ | 1,990,000원 |  |  |

**19.**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B가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 2021.3.3.)으로 액면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비율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무상증자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자기주식처분이익 | 2,200,000원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2,000,000원 | | 재평가적립금\* | 1,500,000원 | | \*  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0%를 자본전입함. | |   (2)  ㈜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3)  ㈜A는 당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은 30%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02,000원 | ② | 111,000원 | ③ | 175,000원 |
| ④ | 238,000원 | ⑤ | 259,000원 |  |  |

**20.**「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는 제외)의 구입비용으로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 ② | 법인이 다른 법인과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③ | 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④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
| ⑤ |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1.**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사회적 기업 아님)의 제21기(2021.1.1.～2021.12.31.)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10%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5,000,000원  (2)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000원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  |  | | --- | --- | | 내 역 | 금 액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 3,000,000원 | | 무료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 2,000,000원 |   (4)  당기 중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10%한도 기부금 대상)에 양도한 토지(장부가액 40,000,000원)의 내역:  ① 양도가액: 50,000,000원  ② 양도당시 시가: 80,000,000원  (5)  제18기(2018.1.1.～2018.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  (6)  ㈜A는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200,000원 | ② | 360,000원 | ③ | 2,800,000원 |
| ④ | 7,720,000원 | ⑤ | 7,800,000원 |  |  |

**22.**「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② |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 ③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
| ④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⑤ |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

**23.**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장부상 평가액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 | 제 품 | 3,000,000원 | 3,200,000원 | 3,000,000원 | 2,700,000원 | | 재공품 | 3,600,000원 | 3,900,000원 | 3,700,000원 | 3,400,000원 | | 원재료 | 4,250,000원 | 4,500,000원 | 4,250,000원 | 4,100,000원 |   (1)  회사는 제품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제품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2)  재공품은 신고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3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전기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원재료 평가감 100,000원(유보)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850,000원 | ② | (+)750,000원 | ③ | (+)650,000원 |
| ④ | (-)650,000원 | ⑤ | (-)850,000원 |  |  |

**24.**「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  |
| --- | --- |
| 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
| ②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④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25.**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금융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당기 말 계정잔액은 60,000,000원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 증가액 50,000,000원은 추가납입한 것이며 당기 감소액은 20,000,000원이다.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 | | | | 당기감소 | 20,000,000 | 기초잔액 | 50,000,000 | | 기말잔액 | 60,000,000 | 당기증가 | 30,000,000 |   (3)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는 48,000,000원의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증가액은 ㈜B와의 합병(합병등기일: 2021.4.5.)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손금부인액 29,000,000원 포함)을 승계한 것이다.  (4)  당기 중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5)  ㈜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30,000,000원(△유보)이다.  (6)  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66,000,000원, 보험수리적기준 60,000,000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1,000,000원 | ② | (-)21,000,000원 | ③ | (-)30,000,000원 |
| ④ | (-)50,000,000원 | ⑤ | (-)61,000,000원 |  |  |

**26.**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국고보조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1년 1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차)  현  금 | 50,000,000 |  | (대)  영업외수익 | 50,000,000 | | (차)  건  물 | 100,000,000 |  | (대)  현  금 | 100,000,000 |   (2)  2021년 4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기계장치를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건물은 정액법(신고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하며, 기계장치도 정액법(신고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한다. ㈜A는 기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다(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없음).  (4)  ㈜A는 건물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5,000,000원 | ② | (-)15,000,000원 | ③ | (-)20,000,000원 |
| ④ | (-)45,000,000원 | ⑤ | (-)65,000,000원 |  |  |

**27.**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토지 및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제외)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갑이 소유한 토지를 2020년 5월 6일에 30,000,000원(시가 20,000,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  |  |  |  | | --- | --- | --- | --- | --- | | (차) 토  지 | 30,000,000 |  | (대) 현  금 | 15,000,000 | |  |  |  | 미 지 급  금 | 15,000,000 |   ㈜A는 당기에 토지 취득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고, 미지급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2)  ㈜A는 특수관계인 을에게 2020년 9월에 2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이자율 약정 없음)하였고, 당기 말 현재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  (3)  ㈜A의 당기 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차입하였다.   |  |  |  |  | | --- | --- | --- | --- | | 차입일 | 연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 | | 2020.8.1. | 5% | 10,000,000원 | 200,000,000원 | | 2020.6.1. | 10% | 30,000,000원 | 300,000,000원 |   (4)  ㈜A는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9%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800,000원 | ② | (+)1,600,000원 | ③ | (+)400,000원 |
| ④ | (-)8,200,000원 | ⑤ | (-)8,400,000원 |  |  |

**28.**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 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공제한도금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
| ⑤ | 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29.**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  |
| --- |
| (1)  제21기 과세표준은 260,000,000원(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포함)이며, 최저한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액 20,000,000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2)  제21기에 외국 자회사B로부터 배당금 2,000,000원(원천징수세액 262,500원이 차감된 금액임)을 받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익금산입된 자회사B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500,000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중간예납세액은 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  |  |  |  |  |  |
| --- | --- | --- | --- | --- | --- |
| ① | 8,560,000원 | ② | 19,260,000원 | ③ | 24,375,000원 |
| ④ | 28,300,000원 | ⑤ | 31,660,000원 |  |  |

**30.**「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③ |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④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⑤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31.**2021년 제1기(2021.1.1.∼2021.6.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A와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재화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과 비품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① 매각내역   |  |  |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매각일 | 공급가액 | | 차 량 | 2020.3.1. | 40,000,000원 | 2021.4.1. | 20,000,000원 | | 비 품 | 2020.8.1. | 1,000,000원 | 2021.5.1. | 400,000원 |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  |  |  |  | | --- | --- | --- | --- | | 구 분 | 2020년 제1기 | 2020년 제2기 | 2021년 제1기 | | 과세사업 | 53% | 50% | 60% | | 면세사업 | 47% | 50% | 40% |   (2)  과세사업자인 ㈜B는 2021년 4월 10일에 토지와 건물을 500,000,000원에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없다.   |  |  |  |  | | --- | --- | --- | --- | | 구 분 | 실지거래가액 | 공급계약일 현재 | |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토 지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160,000,000원 | | 건 물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24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① | 210,200,000원 | ② | 210,400,000원 | ③ | 260,000,000원 |
| ④ | 310,200,000원 | ⑤ | 310,400,000원 |  |  |

**32.**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  |
| --- | --- |
| ① | 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A를 판매하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 300,000원(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음)과 현금 700,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경우 재화A의 공급가액은 700,000원이다. |
| ② |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B(시가 1,000,000원)를 공급하고 재화C(시가 900,000원)를 대가로 받았다. 이 경우 재화B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
| ③ | 사업자가 재화D를 3월 20일(기준환율: 1,100원/$)에 인도하고 4월 20일(기준환율: 1,050원/$)에 $1,000를 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D의 공급가액은 1,100,000원이다. |
| ④ | 사업자가 재화E를 시가인 1,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3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00,000원을 약정된 상환일에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E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
| ⑤ | 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F를 매출에누리 100,000원을 차감한 9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화F의 공급가액은 900,000원이다. |

**33.**다음의 거래에 대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 --- |
| (1)  ㈜A는 2020년 11월 1일에 ㈜B에게 제품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2)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A는 2021년 1월 20일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 ㈜A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3)  ㈜A는 대손처리한 ㈜B에 대한 채권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년 3월 10일에 ㈜B로부터 회수하였다. |

|  |  |
| --- | --- |
| ① | ㈜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 ② | ㈜A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 ③ | ㈜A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5,000,000원을 더한다. |
| ④ | ㈜B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
| ⑤ | ㈜B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00,000원을 매입세액에 더한다. |

**3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  |  |  |  | | --- | --- | --- | --- | | 구 분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공통매입분 | | 원재료 | 50,000,000원 | 30,000,000원 | - | | 비 품 | 10,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 기계장치 | - | - | 10,000,000원\*\* | | \*   2021년 4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비품을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21년 6월 30일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 | | | | \*\*   2021년 5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 | | |     (2)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21년 4월 15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차량은 2019년 12월 10일에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  |  |  | | --- | --- | --- | | 구 분 | 2020년 제2기 | 2021년 제1기 | | 과세사업 | 70% | 80% | | 면세사업 | 30% | 20% | |

|  |  |  |  |  |  |
| --- | --- | --- | --- | --- | --- |
| ① | 67,200,000원 | ② | 67,400,000원 | ③ | 70,100,000원 |
| ④ | 70,200,000원 | ⑤ | 70,400,000원 |  |  |

**35.**돈가스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중소기업)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1.1.1.∼2021.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매입내역   |  |  |  | | --- | --- | --- | | 구 분 | 취득가액 | 비 고 | | 돼지고기 | 26,000,000원 | - | | 밀가루 | 22,100,000원 | 수입산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20,800,000원, 관세는 1,300,000원임. | | 소 금 | 10,920,000원 |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운임 52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 치 즈 | 5,200,000원 | - | | 김 치 | 3,900,000원 | - |   (2)  매입한 돼지고기 중 30%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60%는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고, 10%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  (3)  매입한 밀가루, 소금 및 치즈는 모두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으며, 김치는 모두 종업원에게 사내식당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4)  중소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800,000원 | ② | 1,900,000원 | ③ | 1,950,000원 |
| ④ | 2,000,000원 | ⑤ | 2,100,000원 |  |  |

**36.**「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 ② |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 ③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 ④ |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 ⑤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37.**「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  |
| --- | --- |
| ① | 일반과세자 중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② | 모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
| ③ | 일반과세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④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 ⑤ | 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38.**「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
| ③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어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9.**거주자 갑(2021년 5월 2일 사망)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회사채\* | 아파트\*\* | | 갑의 취득가액 | 1,000,000,000원 | 2,500,000,000원 | | \*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채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다. | | | |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 | | |   (2)  상속재산 중 회사채의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은 1,300,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3)  장례비용으로 봉안시설사용료 9,000,000원과 기타 장례비용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봉안시설사용료는 적법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기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다.  (4)  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60세), 아들(40세), 아들의 배우자(42세)가 있으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① | 1,690,000,000원 | ② | 1,990,000,000원 | ③ | 1,995,000,000원 |
| ④ | 2,190,000,000원 | ⑤ | 2,495,000,000원 |  |  |

**40.**「지방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① |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
| ② | 선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이다. |
| ③ |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
| ④ |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다. |
| 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다. |

|  |
| --- |
|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끝-